

「국군포로 기억의 날」 지정 촉구 건의안

(문성호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3240
----------	------

발 의 년 월 일: 2025년 10월 20일

발 의 자: 문성호, 강석주, 고광민,
김경훈, 김규남, 김영철,
김원중, 김원태, 김재진,
김지향, 김태수, 김형재,
김혜영, 남궁역, 민병주,
서상열, 유만희, 이상욱,
이성배, 이종태, 이종환,
이희원, 임춘대, 채수지,
최민규, 허 훈, 홍국표
의원(27명)

1. 주문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제15조의6(국군포로 기억의 날)을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으로 매년 11월 26일을 「국군포로 기억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군포로 기억의 날」에 적합한 행사,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것을 건의함

2. 제안이유

- 6·25전쟁이 발발한지 7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1953년 정전협정 체결 후 6만 명의 국군포로가 송환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되며, 1994년 10월 23일 조창호 소위가 귀환에 성공하여 동년 11월 26일 보국훈장 통일장을 받고 중위로 전역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80명의 국군포로가 귀환하였지만 대부분 돌아가시고 8명만 살아계신 상황임

- 2014년 2월 17일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에서 공개한 조사 보고서는 북한의 체계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침해의 중대성, 규모, 성격은 “현 세상에서 유례가 없는 국가(a state that does not have any parallel in the contemporary world)”를 보여준다고 평가하면서 북한의 국군포로 억류가 「포로의 대우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제3협약)」 위반임을 확인하고 이를 포함한 북한의 여러 인권침해가 반인도범죄(crimes against humanity)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면서 북한 사태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를 권고함
- 2024년 12월 20일 개정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6·25전쟁 납북자 기억의 날)는 납북자를 기억하고 납북피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6월 28일을 6·25전쟁 납북자 기억의 날로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6·25전쟁 납북자 기억의 날에 적합한 행사,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국군포로를 기억하고 북한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날은 지정된 바 없음
- 국군포로를 기억하고 국군포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국군포로의 생사 확인과 송환을 촉구하기 위하여 1994년 조창호 중위가 전역식을 가진 11월 26일을 「국군포로 기억의 날」로 지정하고자 하는 필요성이 대두됨
- 이에 따라 매년 11월 26일의 「국군포로 기억의 날」 지정 등의 법적 근거를 포함하도록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제15조의6(국군포로기억의 날)을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을 건의함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북한인권법」 등

4. 이송처

○ 대한민국 국회

「국군포로 기억의 날」 지정 촉구 건의안

북한의 기습남침으로 시작된 6·25전쟁이 발발한지 7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1953년 정전협정이 체결된 후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국군포로는 약 8천 명에 불과하고, 6만 명의 국군포로가 돌아오지 못했다고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1994년 10월 23일 조창호 소위가 귀환에 성공하여 동년 11월 26일 보국훈장 통일장을 받고 중위로 전역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80명의 국군포로가 목숨을 건 탈북 노력의 결과로 대한민국에 귀환하였고, 이들의 귀환으로 북한에서 국군포로의 참혹한 현실과 수많은 국군포로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후 국군포로 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나 2020년 7월 북한과 김정은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또 다른 국군포로 고 한재복 어르신과 함께 승소했던 노사홍 어르신이 작년 11월 숨을 거두시는 등 80명의 귀환 국군포로 대부분이 돌아가셔서 8명만 살아계신 상황입니다.

2014년 2월 17일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D)가 공개한 조사보고서는 북한의 체계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침해의 중대성, 규모, 성격은 “현 세상에서 유례가 없는 국가(a state that does not have any parallel in the contemporary world)” 를 보여준다고 평가하면서 북한의 국군포로 억류가 「포로의 대우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제3협약)」 위반임을 확인하고 이를 포함한 북한의 여러 인권침해가 반인도범죄(crimes against humanity)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면서 북한 사태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를 권고하였습니다.

작년 2월 17일 COI 보고서 공개 10주년을 맞아 한국, 미국, 일본은 북한에 대해 국제법상 의무를 준수하고 납북자, 억류자,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의 즉각적 해결을 포함한 모든 인권 침해와 유린 종결을 위한 즉각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가 차원에서 국군포로를 기억하고 국군포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국군포로의 생사 확인과 송환을 촉구하기 위한 국군포로 기억의 날, 북한인권증진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제고하고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북한인권증진의 날은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은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및 「북한인권법」을 개정하여 1994년 조창호 중위가 전역식을 가진 11월 26일을 「국군포로 기억의 날」로 지정할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2025. 11.

서울특별시의회의의원 일동